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회)	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2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,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(보조 '20.10. 과징금·과태료 '20.12.)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·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(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(별표 5 및 별표 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 2. ~ 2021. 3.) 예정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비율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
1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조·설비 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24조제1호	250만원
2.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제2호	250만원
3. 법 제17조제2항(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	법 제24조제3호	150만원
4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(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)	법 제24조제4호	250만원
5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(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)	법 제24조제5호	150만원

비고1 :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
비고2 : 지자체장은 주차장 사업자 등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 6 제1호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30조제1항 및 제2

항”을 “법 제30조제1항·제2항·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7조제2항(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	법 제30조제2항제1호	100만원
나.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(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30조제2항제2호	100만원
다. 법 제19조의10제2항(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3항제1호	50만원
라.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2항제3호	100만원
마.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3항제2호	50만원
바.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2항제4호	100만원
사.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30조제1항제1호	500만원
아.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	법 제30조제1항제2호	500만원
자.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(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30조제2항제5호	100만원

차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30조제2항제6호	100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의 제14조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5·별표 6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보조) (생략)	제14조(보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비율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4